

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연철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(2014. 2. 7. 시행)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, 개발사업,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,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,
-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경관계획(안 제6조부터 제8조)
 -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, 경관계획의 내용,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경관사업(안 제9조부터 제15조)
 - 경관사업의 대상, 경관사업계획서, 경관사업추진협의체,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,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사항을 정함
- 경관협정(안 제16조부터 제26조)
 -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, 경관협정의 내용, 협정서 작성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

- 사회기반시설 사업,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함
- 경관위원회(안 제27조부터 제33조)
 - 효율적 경관심의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, 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

4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안은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
-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, 경관계획의 내용,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경관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
-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하고 재정 지원사항의 신설 규정은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
-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붙임: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